

< 수시 공시 >

2010.11.11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 : 신영더블플러스10 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)
2. 공시 사유 :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
3. 주요 변경 내용
 - 1)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변경(30%→10%)
 - 2) 주식 취득한도 단서 조항 중 집합투자증권 등 관련 투자대상 구체화
 - 3) 소규모 펀드 해지 및 수시공시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
 - 4)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
4. 변경시행일 : 2010.11.11.(목)
5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 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